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13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525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redacted]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20. 선고 2013구합5427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8.
판 결 선 고	2015. 11.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5. 원고에게 한 취득세 가산세 6,599,360원, 지방교육세 3,126,470원, 농어촌특별세 1,426,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5. 원고에게 한 취득세 본세 27,406,000원 및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13

가산세 6,599,360원, 지방교육세 3,126,470원, 농어촌특별세 1,426,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5행부터 제3쪽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9행부터 제6쪽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6쪽 제11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5)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의 위법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3~14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13

용한다.

다. 판단

(1)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주장에 관하여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이하 '구법 규정'이라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이하 '개정법 규정'이라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앞서 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개정법 규정은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특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채권자와의 과세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법 규정에서 정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채권을 양수한 후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담보부동산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개정법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13

2015. 9. 24. 선고 2015두3893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8쪽 제6행부터 제10쪽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비과세 관행 성립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0쪽 제9행부터 제11쪽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가산세 부분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1쪽 제3행부터 제12쪽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13

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등 참조).

또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및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채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 등만을 기재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13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취득세 본세(27,406,000원) 및 가산세(6,599,360원)의 각 금액,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각 금액(본세와 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각 과세표준과 위 각 세목의 세율 및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은 위 납세고지서의 이면에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부하기 전인 2013. 1. 15. 과세예고 통지(을 제6호증)를 하였는데, 위 과세예고 통지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각 세율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각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각 과세표준과 위 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율 및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위 납세고지서의 취득세 본세 금액은 위 과세예고 통지의 그것과 일치하나, 위 납세고지서의 취득세 가산세 금액 및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각 금액은 위 과세예고 통지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 중 ① 취득세 본세 27,406,000원 부분에 관한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하자가 있으나, 위 과세예고 통지에 의하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② 취득세 가산세 6,599,360원 및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각 본세, 가산세에 관한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하자가 있고, 위 과세예고 통지에 의하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13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가산세 부분 및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나,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가산세 부분 및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가산세 부분 및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강경구

판사 남양우